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96
----------	------

제출연월일: 2019. 11. .
제 출 자: 성동구청장

1. 제안이유

건전한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성동구 수련원 ‘성동힐링센터 휴 여수캠프’의 사용료를 규정하고, 운영현황에 맞도록 서식 문구를 수정하여 수련원 운영제도 정착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성동 힐링센터 휴(休) 여수캠프의 사용료를 규정함(안 별표 2)
- 나. 운영 현황에 맞게 서식 문구를 수정함(안 제11조, 제16조, 별지 제 1~4호서식)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19. 10. 10. ~ 2019. 10.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 규제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사용승인서를 즉시”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만 13세”를 “13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
상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③ 비수기에 단체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감면조건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해서 감면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이용 신청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련원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비 고
성동힐링센터 휴(休) 영월캠프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동강로 1488-23	
성동힐링센터 휴(休) 여수캠프	·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921	

[별표 2]

수련원 시설 사용료(제14조제1항 관련)

○ 사용시간(1박 기준): 14:00 ~ 익일 11:00

○ 사 용 료

(단위: 원)

수련원 명 칭	시설물 (정원)	사용기간	사 용 료			비고
			성동구민	수련원 소재지 주 민	타지역 주 민	
영월 캠 프	펜션형 숙소 (4인실) 및 카라반	성수기, 주말 공휴일	40,000	48,000	60,000	○ 성수기:7월~9월 ○ 비수기:성수기, 주말제외 ○ 주말: 금, 토 ○ 펜션형 숙소의 정원 외 추가 시 1명당 10,000원 (침구류 포함) ○ 침구류만 추가 시 1세트당 5,000원
		비수기	30,000	36,000	45,000	
	글램핑장	연 중	20,000	24,000	30,000	
	캠핑장	연 중	10,000	12,000	15,000	
여수 캠 프	펜션형 숙소 (4인실) 및 카라반	성수기, 주말 공휴일	50,000	60,000	75,000	○ 침구류만 추가 시 1세트당 5,000원
		비수기	40,000	48,000	60,000	
	펜션형 숙소 (6인실)	성수기, 주말	60,000	84,000	105,000	
		비수기	50,000	72,000	90,000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사용승인) ① ~ ③ (생략)</p> <p>④ 구청장은 제12조에서 정한 제한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사용승인서를</u>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p>	<p>제11조(사용승인)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u>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u> ----.</p>
<p>제16조(사용료 감면) 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에 따른 수급자 2. 「<u>장애인복지법</u>」에 따라 등록된 <u>등록장애인</u> 3.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국가유공자</u> 4. 「<u>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적용대상자</u> 	<p>제16조(사용료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제 <u>2조제2호</u>----- 2. 「<u>장애인복지법</u>」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u>장애인</u> 3.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6조에 따라 등록된 <u>국가유공자</u> 4. 「<u>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제3호에 따른 <u>의상자</u>

- 5.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
우대자
-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
른 보호대상자
- 7.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
른 다문화 가족
- 8. 만 13세 이하의 자녀를 둔 다
자녀가족(3자녀 이상)

<신 설>

<신 설>

<신 설>

[별표 1]

수련원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비고
성동힐링센터 휴(休) 영월캠프	· 강원도 영월군 영월 읍 동강로 1488-27(문산 리 483-1 외 1필지)	
성동힐링센터 휴(休) 여수캠프	·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로 416-1 (화양면 장 수리 921 외 2)	

- 5. 「노인복지법」 제26조-----

-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
2호-----
-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 8. 13세 -----

③ 비수기에 단체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감면조건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해서 감면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
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이용 신청 시 증빙자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수련원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 명칭 및 위치

---	---	---
---	· ----- ----- 1488-23	
---	· ----- 장수리 921	

[별표 2]

성동구 수련원 시설 사용료(제14조제1항 관련)

1. 시설 사용

- 사용시간(1박 기준): 14:00 ~ 익일 12:00
- 사용료

<신 설>

구분	시설물	사용료(원)		비고
		기간	금액	
성동구 및 수련원 소재지 주민	펜션형 숙소 (26㎡)	성수기, 주말	40,000	성수기: 7월~ 9월 비수기: 7월~ 9월 이외
		비수기	30,000	
	캐러반	성수기, 주말	40,000	
		비수기	30,000	
	몽골텐트		20,000	
캠핑장		10,000		
타 지 역 주민	펜션형 숙소 (26㎡)	성수기, 주말	68,000	주말: 금요일, 토요일 <신설> <신설>
		비수기	51,000	
	캐러반	성수기, 주말	68,000	
		비수기	51,000	
	몽골텐트		34,000	
캠핑장		17,000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2. 감 면 내 용

구분	사용대상	감면비율	비고
감면대상자	· 소년·소녀 가장 및 가정 위탁아동	100%	
	· 국민기초수급자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의사상자 예우 적용 대상자 · 경로우대자 및 한부모가족 · 다문화 가족 및 다자녀 가족	50%	
	· 단체(20명 이상)	20%	

【별지 제1호서식】

성동구 수련원 단체사용(변경) 승인신청서
[제11조제2항 관련]

▶ 접수번호 제 호 【접수일자: 201 . . . ()】

[별표 2]

수련원 시설 사용료(제14조제1항 관련)

<삭 제>

- 사용시간(1박 기준): 14:00 ~ 익일 11:00
- 사용료

(단위: 원)

수련원 명칭	시설물 (정원)	사용기간	사 용 료			비고
			성동구 주민	수련원 소재지 주민	타지역 주민	
영월 캠핑	펜션형 숙소 (4인실) 및 캐러반	성수기, 주말	40,000	48,000	60,000	○성수기:7월~ 9월 ○비수기:성수 기, 주말 제외 ○주말: 금,토 ○펜션형 숙소 의 정원 외 추 가시 1명당 10,000 원 (침구류 포함) ○침구류만 추 가시 1세트당 5,000 원
		비수기	30,000	36,000	45,000	
	글램핑장	연 중	20,000	24,000	30,000	
	캠핑장	연 중	10,000	12,000	15,000	
여수 캠핑	펜션형 숙소 (4인실) 및 캐러반	성수기, 주말	50,000	60,000	75,000	
		비수기	40,000	48,000	60,000	
	펜션형 숙소 (6인실)	성수기, 주말	60,000	84,000	105,000	
		비수기	50,000	72,000	90,000	

<삭 제>

【별지 제1호서식】

수련원 단체사용(변경) 승인신청서
(제11조제2항 관련)

▶ ----- 【-----: 20 . . . ()】

신청자	<input type="checkbox"/> 예약자: <input type="checkbox"/> 주소: <input type="checkbox"/> 전화번호: () 휴대폰: <input type="checkbox"/> 팩스(FAX) :		
예약 내용	<input type="checkbox"/> 사용목적: <input type="checkbox"/> 사용일시: (박 일) <input type="checkbox"/> 사용인원: 명 <input type="checkbox"/> 예약사항:		
사용료	산출내역:	금 액:	원
<p>성동구 수련원에서 정한 사용약관과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드리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승인신청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 신청자: (서명)</p> <p>성동구청장 귀하</p>			

[별지 제4호서식]

성동구 수련원 개인사용 승인서
<신 설>

▶ 승인번호: 제 호 【승인일자: 201】

신청자	<input type="checkbox"/> 예약자: <input type="checkbox"/> 주소: <input type="checkbox"/> 전화번호:		
예약 내용	<input type="checkbox"/> 사용목적: <input type="checkbox"/> 사용일시: <input type="checkbox"/> 사용인원: <input type="checkbox"/> 승인사항:		
승인 여부 및 사용료	승인 여부		사 용 료
	· 사용승인: · 사용불가:	산출내역:	· 금 원
입금 계좌	은행명	우리은행	
	예금자명	성동구청장	
	계좌번호		
<p>귀 단체에서 신청한 시설물 사항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승인합니다.</p> <p>※ 사용승인 단체는 성동구 수련원 이용약관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사용료는 사용일 1일 전까지 입금 완료 되어야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 성 동 구 청 장</p>			

-----	-----	-----	-----
-----	-----	-----	-----
-----	-----	-----	-----
-----	-----	-----	-----
<p>수련원에서 -----</p> <p style="text-align: right;">20</p>			

[별지 제4호서식]

수련원 개인사용 승인서
(제11조제4항 관련)

▶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p>귀하의 수련원 사용승인 신청에 -----</p> <p>※ 승인된 사용자는 -----</p> <p style="text-align: right;">20</p>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 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성동힐링센터 휴 여수캠프 설치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안 별표1)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수련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안 별표1)

나. 전제

- 비용은 2020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인건비(기간제근로자 6명 예상)와 운영비 반영
- 연간 세입비용을 비수기, 성동구민 이용비용, 만실 기준의 40%로 세입 추계

다. 추계기간

- 5년(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 발생이 예상됨)

라. 방법

- 성동힐링센터 휴 영월캠프 '19년도 자료를 근거로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208,772천원
= 156,052천원(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52,720천원(일반운영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2023)	5차년도 (2024)	합계
	세입	사용료 수입	97,820	97,820	97,820	97,820	97,820
소계(a)		97,820	97,820	97,820	97,820	97,820	489,100
세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6,052	156,052	156,052	156,052	156,052	780,260
	일반운영비	52,720	52,720	52,720	52,720	52,720	263,600
	소계(b)	208,772	208,772	208,772	208,772	208,772	1,043,860
<input type="checkbox"/> 총 비용(b-a)		110,952	110,952	110,952	110,952	110,952	554,760

4. 재원조달 방안: 구비

5. 덧붙이는 의견: 구체적인 세출은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자치행정과 행정 7급 신동현 (02-2286-5138)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인건비, 휴일수당, 4대 보험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 예약시스템 운영, 소모품 구입비,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일반운영비)

2. 세부추계내역

- 기간제근로자 6명 인건비: 156,052천원 (1년 기준)
= 118,737천원(인건비) + 23,748천원(휴일수당) + 13,567천원(4대 보험료)
- 일반운영비: 52,720천원 (1년 기준)
= 7,920천원(예약 시스템 운영비) + 10,000천원(소모품 구입비)
+ 4,800천원(유지관리비) + 30,000천원(공공운영비)

< 관 계 법 규 >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